

운영규정 개요

(2023년~)

I. 기본정보

기관명	관장은데이케어센터	설치일자	2021. 03. 29
소재지	경기도 하남미사강변대로34번길 100 미사타워 3층		
전화	031. 795. 5542.	이용정원	66명
이용대상	'65세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II.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시 이용자(보호자)와 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모든 계약서의 부분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③ 이용자(보호자)은 서비스내용(분류번호)이나 이용 횟수의 변경 시는 본 센터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④ 본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 급여제공비용 수가변경(인상)에 대한 확인을 받아 기존 계약서에 추가 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를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이용료	① 이용료는 아래 비용을 이용일수에 반영하여 센터에서 발송한 청구서 확인 후 해당 월에 납부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 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수가표 반영(매년 고시) - 비급여: 식비(1식 3,500), 간식비(1,200), 개인 비품(기저귀 등)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IV.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	---------------